

『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제2항에 따라 “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”의 가입을 위하여 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(의결)을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정함(안 제2조)
 -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에 관한 사항
 -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, 연구, 교육에 관한 사항 등
-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정함(안 제3조)
 - 구성 : 성북구 등 35개 자치단체 ▷붙임 명단 참조
 - 회원 : 지방정부의 장
- 협의회 임원과 그 임기에 대하여 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
 - 임원 : 회장1인, 부회장5인 이내, 사무국장1인, 감사1인
 - 임기 : 1년, 1차에 한해서 연임 가능
- 협의회 회의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함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
 - 회의는 정기회의(연 1회 소집)와 임시회의(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시 소집)로 구분
 - 회의개최 30일 전 의안의 제출 등
-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할

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
- 협의회와 공동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(안 제12조)
- 회계보고와 결산에 대하여 정함(안 제13조)
- 협의회와 가입 및 탈퇴에 대하여 정함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: 붙임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규약 동의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(협의회의 조직) 및 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, 구성, 임원과 그 임기, 회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본 규약안은 그 내용이 적절하나, 젊은 도시인 만큼 아동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